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61-1996-768058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제비동 제5층 제5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건 1)	1979년2월27일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제비동	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1154.05㎡ 2층 1112.40㎡ 3층 1112.40㎡ 4층 1112.40㎡ 5층 1112.40㎡ 6층 1112.40㎡ 7층 1112.40㎡ 8층 1112.40㎡ 9층 1112.40㎡ 10층 1112.40㎡ 11층 1112.40㎡ 12층 1112.40㎡ 옥탑1층 82.65㎡ 옥탑2층 82.65㎡ 지하실 1103.81㎡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3일 전산이기
2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제비동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	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1154.05㎡ 2층 1112.40㎡ 3층 1112.40㎡ 4층 1112.40㎡ 5층 1112.40㎡ 6층 1112.40㎡ 7층 1112.40㎡ 8층 1112.40㎡	도로명주소 2014년10월17일 등기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제비동 제5층 제501호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			9층 1112.40㎡ 10층 1112.40㎡ 11층 1112.40㎡ 12층 1112.40㎡ 옥탑1층 82.65㎡ 옥탑2층 82.65㎡ 지하실 1103.81㎡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	대	13936㎡	1986년3월24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3일 전산이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79년2월27일	제5층 제501호	철근콘크리트조 140.79㎡	도면편철장 제1책 제938호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3일 전산이기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	13936분의 80.11	1986년3월24일 대지권 1986년3월24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3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6)	소유권이전	2001년3월19일 제10669호	2001년2월17일 매매	소유자 지민호 620704-*****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1 미성아파트 에이-815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3일 전산이기
1-1	1변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08년12월1일 전거	지민호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 201-2303 2009년5월25일 부기
2	소유권이전	2009년5월25일 제21285호	2009년4월10일 매매	공유자 지분 2분의 1 백풍렬 690805-***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바-501 지분 2분의 1 최영숙 730801-***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바-501 거래가액 금1,180,000,000원
2-1	2변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2년9월7일 제35272호	2012년8월14일 개명	최영숙의 정명(명칭) 최유연
2-2	2변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7년2월8일 제27245호	2015년2월9일 전거	백풍렬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, 501동 202호(목동, 목동신시가지아파트)
2-3	2변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7년2월8일 제27246호	2015년2월9일 전거	최유연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, 501동 202호(목동, 목동신시가지아파트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09년5월25일 제21287호	2009년5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420,000,000원 채무자 백풍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바 50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 행 110111-0013419 서울특별시 중로구 공평동 100 (트윈타워지점)
1-1	1변등기명의인표사 변경	2015년2월6일 제5752호	2012년1월11일 상호변경	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성명(명칭)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1-2	1변등기명의인표사 변경	2015년2월6일 제5753호	2015년2월5일 취급지점변경	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취급지점 리테일금융서비스부리테일금융운영
1-3	1변근저당권변경	2015년2월6일 제5754호	2015년2월5일 변경계약	채권최고액 금188,300,000원
2	전세권설정	2015년2월9일 제6232호	2014년11월14일 설정계약	전세금 금665,000,000원 범 위 주거용 건물의전부 존속기간 2015년 2월 9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전세권자 김의년 750507-***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, 에이동 712호(여의도동,미성아파트) 정지현 760815-***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, 에이동 712호(여의도동,미성아파트)
2-1				2변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5년2월9일 부가
2-2	2변등기명의인표사 변경	2017년2월8일 제27247호	2015년7월14일 전거	김의년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, 비동 501호(여의도동,미성아파트)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제비동 제5층 제501호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2-3	2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7년2월8일 제27248호	2015년7월14일 전거	정지현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, 비동 501호(여의도동, 미성아파트)
2-4	2번전세권변경	2017년2월8일 제27249호	2016년12월24일 변경계약	전세금 금700,000,000원 존속기간 2017년 2월 8일 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
3	2번전세권설정등기 말소	2019년2월18일 제27369호	2019년2월7일 해지	
4	1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21년12월6일 제288437호	2021년12월6일 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61-1996-768058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2 미성아파트 제비동 제5층 제5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백풍렬 (공유자)	690805-*****	2분의 1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, 501동 202호(목동, 목동신시가지아파트)	2
최유연 (공유자)	730801-*****	2분의 1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, 501동 202호(목동, 목동신시가지아파트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